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46 |
|----------|-----|

제출년월일 : 201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 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 나. 신고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보호 장치 강화를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급심사·결정을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 신설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9쪽)

#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관에게 한다.
-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실조사)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3조(환수)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  |              |  |      |  |
|--|--------------|--|------|--|
| 신 고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br>(소 속) |  | 전화번호 |  |
| 피 신고인<br>(부조리행위자)  | 성 명          |  | 소 속  |  |
|  | 직 위<br>(직 급) |  |      |  |
| 신 고 내 용  |              |  |      |  |
| 증 빙 서 류  |              |  |      |  |
| 비 고  |              |  |      |  |
| <p>「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              |  |      |  |



[별표 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 구분 | 유 형(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
|----|----------------|---|
| 1  | 조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li> <li>·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li> </ul>   |
| 2  | 조례 제2조제3호나목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br/>단,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지급</li> <li>·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br/>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 이내 추가지급</li> </ul> |
| 3  | 조례 제2조제3호다목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li> <li>·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200 만원</li> </ul>   |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 법령        |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조(조례)</li> </ul> <p><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5조(부패 행위의 신고)</li> <li>○ 제56조(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의무)</li> <li>○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li> <li>○ 제58조(신고의 방법)</li> <li>○ 제59조(신고의 처리)</li> <li>○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li> <li>○ 제62조(신분저장 등)</li> <li>○ 제63조(불이익 추정)</li> <li>○ 제64조(신변보호 등)</li> <li>○ 제65조(협조자 보호)</li> <li>○ 제66조(책임의 감면)</li> <li>○ 제67조(준용규정)</li> <li>○ 제68조(포상 및 보상)</li> </ul> <p style="text-align: right;">“별 첨”</p>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